

# 해외건설 진흥대책

자료제공 : 해외건설협회

## 1. 해외건설 촉진법규의 정비

### 가. 기본방향

민간자율화를 대외진출 활력증대를 위하여 정부의 지도나 간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하며 해외건설의 진출방식 다양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제도 보완하고 건설 시장 개방화등에 대비 기업의 체질개선 유도한다.

### 나. 부문별 개선방안

#### (1)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공사〉

해외에서 발주되는 공사(해외에서 발주 또는 시행되는 공사와 관련된 영업(법 제2조 1호)

〈개정사유〉

자기발주 해외공사(부동산 개발사업, 모기업 발주 해외공사 등 및 국내 공공기관 발주 해외 공사를 포괄하지 못하여 당해공사 관리 및 지원근거 미비하다.

#### (2) 해외건설업자의 범위 확대

〈해외건설업자〉

해외건설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해외건설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나 해외투자 사업(법 제2조 3호)

〈개정사유〉

도급을 받지 않고 자리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 설계, 시공하는 자체 개발사업을 포괄하지 못하여 관리하기 어렵다.

즉, 해외건설업을 목적으로 자본참여 또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내국인의 자격을 받아 영위하는 영업(현지법인의 해외건설참여 관리), 해외에서 부동산의 개발 거래를 목적으로 사업(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건설 기자재 제작 설치업(조립식 주택, 산업설비에 부수되는 공장 건축 등) 등이다.

#### (3) 해외건설업 면허제도 개정

〈면허업종의 추가 및 효율적 면허관리〉

면허업종에 건설투자업, 건설기자재 제작설치업,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하되 등록제로 운영하고 면허갱신제도 도입 운영하는데 이는 매3년마다의 면허갱신, 기술인력, 경영사항, 공사시공실적, 부실공사 유무등 종합적인 평가 면허갱신을 위한 건설업 전문 진단기관 설립 또는 지정.

### 〈표〉 현지금융 상환제도

건 명	현 행	개 선 안	비 고
현지금융 상환	공사대금 수령액이 계약금액의 70/100에 달하는시점부터 잔여공사대금 수령 비율상환	'92. 9.1부터 개정시행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해외 공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

〈지정사유〉

해외건설 포괄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건설 기자재 제작설치업 및 건설투자업,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토록 하여 관리면허갱신 제도의 확립을 통한 업체 정비 및 정예화 유도.

**2. 국가별 진출업자 지정제도 해제**

**가. 제도개요와 운용실태**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7개국에 대하여 종합, 일반면허 업체중 27개사를 지정 진출토록 유도(법 제17조 제2항) 된다.

즉, 지리적 조건, 관습, 제도등이 상이한 해외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관리 필요하며 경험이 없는 무자격자의 진출로 부실화 우려 상존하기 때문이다.

**나. 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의 필요성**

국가별 진출업자 지정제도는 아국 업자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도급허가 제도, 자율조정제도와 함께 운용됨으로써 과당경쟁해소,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기조 정착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지정 업체로부터 기득권의 장기간

행사, 신규 면허업체의 진출권 봉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정받은 업체의 수주 부진 현상이 노출되는 등 불합리한 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진출업자 지정 대상국의 발주가 동 제도의 지정 당시와 같이 규모가 크대거나, 발주조건이 특히 유리하다거나 하는 점들이 해소됨으로써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진출을 원하는 자를 구속하는 제한이 점차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해외건설 면허업자에게 동등한 진출기회를 부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길이다.

**다. 개선방안**

- 국가별 진출업자 지정 제도 해제('92. 11. 20부터개선시행)

**3. 해외건설 진흥기금 활성화**

**가. 기금제도 개요와 운용실태**

해외건설 진흥기금은 해외건설 시장개척, 선진기술의 도입 및 개발, 대리 시공 공사의 손실보전 등 지속적인 해외건설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다.

기금의 용도는 시장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의 제공, 선진기술의 도입 및 개발 새로운 시장개척 및 국제협력, 대리시공으로 인한 손실보전, 신 경영기법 도입 및 개발등 장관 위촉사항, 특별금융지원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보전 기금의 조성방법은 정부의 출연금 해외건설

〈표〉 해외투자 한도

건 명	현 행	개선안
해외투자 한도확대	1) 500만\$ 이상은 한국 은행 총채 허가 2) 1,000만\$ 이상은 해외투자 심의 위원회 심의	'92. 9. 1부터 개정시행

〈표〉 해외건설 연불금융제도

건 명	구	신(현행)	비 고
• 대상거래	• 신시장으로 최근 3년간 실적무인 국가	• 최근 3년간 전체 수주의 5%미만 수주 국가	• 국가별 한도폐지 • 국외 소요자금 지원 불가
• 대상국가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 모든 국가	
• 연불기간	• 토목, 건축 : 5년 이내 • 산업설비 : 5~7년 이내	• 좌 등 • 산업설비 : 10년 이내	
• 융자금액	• 국가별, 업체별 : 4,000만\$ 이내	• 6,000만\$ 이내	
• 융자비율	• 계약금액 40%내 국내 소요자금	• 계약금액 60%내 국내 소요자금	

\* 해외건설 공사에 대한 자금지원 지침 개정('93. 1. 14부터 개정 시행)

업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원조성 부진 및 운용자금 고갈 등으로 건설시장의 개방화에 대비 기금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해외건설업자 출연금의 급감한 원인은 과거 정부의 출연이 약한데다 조성된 기금도 손실보전 위주로 운용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기금의 환원 미흡으로 출연의지 약화와 해외건설 수주물량

주재 정보원 파견 등 해외건설 정보 수집 및 교류 활동 지원을 들 수 있다.

기금의 안정적 지속적 기반구축을 위하여 기금 적립의 충실화를 꾀하는데 매년 기금조성액의 일정비율(50%) 이상은 기금의 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 의무화한다.

#### 4. 대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외환규제의 완화

현지금융 한도의 대폭확대 (외환관리규정 제 11-11조)

시공사금융 요청공사의 수주확대, 시공사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현지금융 한도를 대폭 확대하며 주요 선진기업들의 경우 한도규제가 없어 공사수주시금융선택의 폭이 크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사별 자금관리가 아닌 업체전체의 자금수지 상황에 따라 한도 관리한다.

① 현지금융의 비율상환제 폐지(외환관리규정 제11-20조)

현지금융 차입시 차입은행과 약정한 상환조건이 무시되며 해외공사의 경우 통상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후 공사자금 회수등 정산이 완

〈표〉 해외사업 소득공제

건 명	현 행	개 선	비 고
· 해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 공제	· 외화수입 금액의 2%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100한도	· 좌 동 · 폐 지	· 조감법 제26조

〈표〉 해외근로자 소득공제

건 명	현 행	개 선	비 고
· 해외 근로자의 국외 소득	· 월 50만	·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표〉 외국인력 국내연수제도

건 명	현 행	개 선	비 고
· 외국인력 국내 연수제도	·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제도 - 전체 생산직 종업원의 10%이내 최고 50명까지 허용 (단기3개월)	· 연수후 해외건설현장 투입조건으로 국내 장기 연수 허용(6개월 이상)	· 현재 제조업 중심

감소에 따른 매출 소득 감소 때문이다.

#### 나.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기금조성의 안정화를 위한 기금출연의 다양화 (기금의 적립목표 설정, 향후 5년간 300억조성)

기금 출연 방법은 정부출연 추진과 해외건설 기성분에 대한 기금 출연 재개

기금의 기업에 대한 환원성제고를 위해 해외 건설 시장개척 및 수주활동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단기)과 해외건설 조사연구활동 지원, 해외

료된다.

② 해외투자 한도 확대(외환 관리규정 제12-7조)

해외투자 허가 및 심의대상 투자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과 해외건설 업체들의 해외투자개발형 공사 촉진

#### 5. 시공사금융 요청공사 수용을 위한 해외건설 연불금융제도 개선

개도국 및 공산권 국가의 금융요청 공사 수주촉진을 위한 연불금융 조건의 개선을 위해 개도국 정부에의 경제협력 차원의 연불조건, 산업설비 수출 연불자금 수준의 용자조건 완화와 Buyer Credit을 활성화 하여 Buyer가 직접 수은의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6. 해외건설 산업의 경쟁력 배양시까지 세제 지원 확충

해외사업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 확대했다.

해외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확대하는데 이는 국내 임금의 상승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MERIT가 없어 해외근무 기피풍조 확산과 '85년 해외 평균임금 596천원서 '92. 2/4분기 해외 평균임금은 1,218천원으로 2배 상승으로 '92. 2/4분기 해외 평균임금 1,218천원, 국내 평균임금 1,162천원으로 국내임금이 해외임금의 95% 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 7. 해외건설 인력양성 및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실시

① 외국인력의 국내 연수제도 확대(출입국 관

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4호)

해외건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고용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들의 생산성 제고 및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기초 실무교육 및 기술연수 필요하여 해외건설 업체도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된다.

- 건설인력의 알선 및 공급
- 기초 한국어 및 한국의 문화, 관습 소개 <효과>
- 제3국 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해외공사 생산성 제고
- 국가간 경제협력과 기술이전 및 국제협력 강화

• 해외건설 관리직 전문화

해외건설의 관리직 직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센터 설치나 교육기관 지정과 함께 프로젝트 발굴, 수주관련 업무, 입찰업무, 계약관리, 프로젝트 금융 관련업무, 클레임 업무등의 전문가양성 및 교육 필요.

<표 > 해외근로자 면세 품목

건 명	현 행	개 선
◦ 면세쿠폰 대상품목	· 컬러 TV · 뮤직센터 · 고급사진기 · 카세트	· 기존품목의 하기 품목 확대(세탁기, 냉장고, VTR, 피아노, 컴퓨터)

<표 > 해외근로자 주택 특별 공급제도

건 명	현 행	개 선
◦ 수혜대상	·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로서 귀국후 1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 해외에서 2년이상 장기 근속한 자로서 현재 근무 중이거나 귀국후 5년내 무주택 세대주
◦ 조 건	· 주택청약예금 300만원 가입후 24개월 경과자	· 주택청약금 300만원 가입후 12개월 경과자
◦ 해당주택및공급	·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 건설량의 10% 이내	· 전과 동 · 건설량의 10% 이내에 우선 분양
◦ 구비서류	· 무주택 증빙 · 해외 1년이상 취업확인 · 주택청약예금 가입 증명	· 무주택 증빙 · 해외 2년이상 장기근속 확인

<표 > 해외건설업체 면허현황(연도별)

구분	년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계		112	105	97	99	96	93	92	77	77	67	155	157	203
건설업체		73	63	58	58	55	53	52	38	37	33	54	64	98
전문업체		39	42	39	41	41	40	40	39	40	34	101	93	105

<기능>

- 주요 해외건설 발주국의 해외건설 관련 제도 조사·연구

- 계약 관리 업무 및 클레임 제도 등의 조사·연구

② 장기무주택 해외근무자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우수 고기능 보유자의 해외근무 유도를 위한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 분양과 현행 기능공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것을 관리직까지 확대 적용한다.

③ 해외근로자 면세 쿠폰 대상품목 확대(특별 소비세법 제15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세탁기, 냉장고, VTR 등의 가전 제품 선호와 함께 기능공들의 해외근무 유인책으로 활용 기대된다.

④ 제3국 건설인력 개발을 위한 해외인력개발 센터 설치

국내 인건비 상승과 해외근무기피 풍조로 제3국 인력 고용확대 불가피하여 인력자원이 풍부한 동남아 또는 중국등에 인력개발센터 설립

<기능>

- 현지국 및 제3국 인력의 건설기술 및 기능교육 훈련

<효과>

- 해외건설 관리부문의 전문성 심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 해외건설 관리능력 향상과 해외건설 전반의 전문가 양성

- 해외건설 수주기회 확대 및 수익성 증대  
- 해외건설 관리직 업무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 8. 전문연구소 기능확충과 지원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건설분야의 종합적·체계적·객관적 차원인 연구성과가 미흡함에 따라 건설업 자체의 경영이나 성장등에 관련한 문제들은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주관적, 간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국민경제적 시각에 입각한 건설산업의

장기발전 전략이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 곤란하다.

이것은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건설산업의 기능과 역할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기업체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의 성과도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향후 건설시장 개방화가 이루어질 경우 필연적으로 도래 될 건설시장의 광역화, 국제경쟁의 심화에 대비 건설산업에 대한 효율적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주요시장에 대한 진출환경, 여건 분석과 해외 경쟁업체의 정보 및 전략 분석 등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연구가 공동 또는 민간의 전문연구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타산업분야에서도 해당 부서별로 국책연구기관이 설립되어 국민경제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건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대안들을 개발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 9. 대북방 및 개도국 경험자금 제공시 해외건설사업과 지원

대북방 및 개도국 진출 장애 요인으로는 재원부족으로 경제개발 속도가 느리며 아국업체의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며 초기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존한다.

그러나 북방권 및 개도국은 선진국보다는 우리와 같은 선발개도국의 개발 경험 및 산업중간기술을 보다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다.

장애요인 극복방안(경험자금제공시)을 살펴보면 경험자금에 건설협력을 포함시키므로 아국 건설업체의 진출기반을 조성하고 진출에 따른 위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아국업체의 진

출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

경협자금에 포함될 건설협력 내역은 기술·경영자문 서비스제공(건설고급인력 파견지원, 무상기술용역제공)과 해당국가의 경제개발에 수반되는 건설사업에 필요한 우리의 축적된 기술과 경영자문등의 Software 제공이며 연수 Program에 초청하여 경험을 상징하는 Pilot Project 해당국가의 경제개발 관점에서 가장 실리적이고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투자효율이 높은 Project 선정 건설한다.

## 10. 기업의 수주능력 제고를 위한 체질개선 유도

기술개발 및 건설관리 수준제고 유도를 위해 플랜트등 기술집약형 공사 시공에 필요한 공법 습득, 엔지니어링 자재구매 등 사업관리 능력 제고, 제3국 인력 노무관리를 위한 십장급 현장 관리 인력 양성, 시장수요에 충당하는 독자적 기술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직업시공에서 사업관리형 시공체제로 전환 유도하는데 한국업체 수주 및 시공관리, 현지 및 개도국 업체는 인력공급 및 토목분야 하청시공을 담당한다.

한편 기존인력(중동 및 해외공사 유경험자 기능보유자)유지, 활용과 함께 고급인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인력의 공동 활용(산, 학, 연 협력체제 구축)한다.

원가절감을 위한 체질개선 위해 EC화의 가일층 추진 시공관리 능력 품질관리 능력의 향상, 경영조직의 효율화 도모, 공사현지 밀착형의 영업 활성화, 기술·경영·시공능력·EC화 가능 여부 등 재평가를 통한 소수 정예화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기한다.

## 11. 건설외교의 활동강화

최근 북방외교의 결실로 구소련, 중국, 동구권 및 인도차이나 지역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건설외교가 필요하며 과거에 중동, 동남아에 국한되었던 협력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 확대를 위하여 또한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을 위하여 민간건설협력 필요성 증대되고 있으며 UR의 효율적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현지화 정책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대북방 및 미진출 개도국의 건설외교 방향은 경협자금을 통한 관·민주도의 건설외교를 전개한다.

즉, 민·관 건설협력 사절단, 조사단 파견과 건설인사 초청방문, 경협자금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 선진국 건설외교 방향은 민간건설협력 체제구축을 우선으로 선진국시장 및 제3국시장 공동 진출과 민간건설 단체간협력 체제 구축, 선진국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증대를 꾀한다.

## 12. 국별시장 정보의 수집체계 및 운용방안

### 가. 목적

해외건설공사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민이 합동으로 공사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의 과학적인 분석과 보급제도를 수립하여 정보활동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한다.

### 나. 기본방침

#### (1) 공사정보 수집 체계화

- 1) 정보수집 조직화(정보센터 운영)
- 2) 정보수집방법 다원화(재외 공관, KOTRA, I.B.R.D, OECD, ADB 등 범세계적)
- 3) 세계굴지 정보조직과 제휴(백텔, 노무라연주소)
- 4) 정기간행물

#### (2) 공사정보 분석 및 관리 전문화

- 1) 지역별, 공종별, 발주형태별 분석(전문화)
- 2) 정보처리의 신속강화(정보안내실, 컴퓨터 활용)

#### (3) 견적자료의 표준화

- 1) 입찰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및 대책강구(공사현황 카드제)

2) 건적금액(시공단가) 표준화(건축자료실 운영)

### 13. 건설기술수준 제고 및 개발 유도 방안

#### 가. 건설기술의 방향성

건설산업의 기본구상, 조사, 설계, 감리, 유지관리등의 소프트형 기술위주 산업구조로 전환되며, 경영합리화와 품질관리등의 공사관리(Construction Management)기술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국가적인 건설기술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속한 정보유통의 가능성 증대와 건설기술연구 개발의 진전에 따라 주요 핵심 기술의 도입 및 소화, 개량이 적극적으로 진전된다.

또한 로봇, 신소재, 생명공학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건설활동의 영역이 확대된다.

#### 나. 국내의 현 기술수준

전반적으로 건설기술 수준이 낙후한 반면 시공기술은 대부분 국제수준에 근접해 있다.

##### (1) 밝은 면

시공기술의 경우 전 Project유형별로 보면 선진국 대비 70%이상의 비교적 높은 기술수준을 갖고 있다. 특히 도로의 경우는 90% 이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 (2) 어두운 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및 유지관리 기술과 같은 소프트 기술은 국제수준에 미흡(선진국 수준의 50~70% 정도) 하다.

국내의 기술용역 해외수준은 7% 수준으로 미국의 32%, 일본의 22% 수준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엔지니어링 기술향상에 지극히 중요한 컴퓨터 기술의 활용 수준을 살펴보면, CAD/CAM을 활용중인 우리나라 업체는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표 > 연도별·지역별 수주현황

구분	누계	79까지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계	99,165	22,012	8,259	13,681	13,321	10,144	6,502	4,691	2,239	1,711	1,602	2,412	6,770	3,038	2,783
중 동	84,235	20,621	7,831	12,674	11,392	9,023	5,911	4,285	1,242	1,314	1,251	1,442	5,812	868	568
사우디	49,526	16,309	5,239	7,763	8,347	4,467	3,186	1,640	517	473	433	292	253	308	299
리비아	18,182	391	1,366	2,469	1,061	3,954	782	992	353	404	618	772	4,754	177	91
이라크	6,451	82	431	1,946	1,496	35	981	1,162	25	251	24	4	11	-	-
이 란	2,733	665	-63	-	18	160	300	27	153	5		240	779	374	76
아시아	13,023	1,111	409	838	1,921	979	568	306	872	298	240	766	712	1,888	2,117
말 련	3,787	319	194	268	402	579	197	102	116	37	-10	420	226	270	668
인 니	1,728	180	79	28	338	103	85	51	188	6	117	112	97	270	75
싱가폴	3,110	3	11	301	928	186	109	13	288	68	13	63	158	60	969
미주·태평양	1,052	233	4	2	9	11	-25	47	88	69	63	164	123	236	27
아프리카	797	48	15	166	-	130	49	53	37	30	48	40	106	37	39
유 럽	58												17	9	32

<표 > 해외건설인력 고용추이 추이

(단위 : 명, %)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2/4
계	147,183	203,178	226,633	222,316	180,623	138,231	102,494	84,347	69,341	54,319	39,738	41,789	35,878
국내인	131,137	163,088	171,170	162,017	131,001	97,928	58,697	42,757	29,256	18,162	11,290	9,417	8,405
외국인	16,046	40,090	55,463	60,299	49,622	40,303	43,797	41,590	40,085	36,157	28,448	32,372	27,473
외국인비율	10.9	19.7	24.5	27.1	27.4	29.1	42.7	49.3	57.8	66.5	71.5	77.4	76.6
증감율	29	38	11	-19	-18.7	-23.4	-25.8	-17.7	-17.7	-21.6	-26.8	5.1	-14.1

#### 다. 건설기술수준 저조의 원인과 문제점

건설기술연구 개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투자기피 현상과 부설연구소나 기술개발 전담부서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기술축적 미흡해 인력양성의 부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의 확산 및 보급체제의 부재와 건설자료의 수집·관리 및 건설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기술관련 기준 및 시방규정의 보완, 정비의 소홀과 연구활동도 미비하다.

건설기술의 장기연구 개발계획의 부재로 건

설기술의 발전목표 미설정 건설기술연구 개발의 일관성 결여 및 단편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이밖에도 대한교육의 교육 프로그램 미정착, 건설기술 지원정책 수립여건 미비, 과학기술정책에서 차지하는 건설기술의 비중 미약, 금융지원 대상이 첨단산업, 신기술사업화 등 제조업 위주이며 건설업은 수혜실적이 미약한 실정이다.

#### 라. 기술능력 제고와 기술개발 촉진 방안

기술경험자의 자문활용을 통해 기술분야 선정, 기술자 기술 보유 및 처리 경험사항 수록, 등 기술에 관한 사안발생시 활용 유도를 꾀한다.

시공기술의 축적관리와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대규모 기술 집약형 공사의 경우 완공후 공사 기술 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이룩한다.

또한 기술내용 소개 및 도입선의 양해를 구하여 사용토록 안내하며 공동 연구대상 기술 및 도입 필요 신기술의 고시와 건설기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및 추진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건설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해 민간, 정부 및 연구소 등에서 역할 분담 처리하며 첨단건설 기술의 개발등을 통한 기술수준의 고도화를 이룩 R&D 투자확대 및 연구 인력의 충원, 엔지니어링 기술 및 고도 첨단기술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강화, 관련 업무의 전산화 고도화 구축한다.

한편 국내 건설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EC화의 적극 추진해 총체적인 Project 수행관리 능력 배양과 인재의 육성 및 확보, 타산업 Engineering 기술과 연계를 위한 기업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표〉 해외건설의 국제수지 개선효과 (단위: 억달러)

구분	년도	'80~'87	'88	'89	'90	'91	합계
A 해외건설 순외화수입		109.9	2.5	1.6	2.8	2.6	119.4
B 기자재 유환수출		24.3	1.4	0.7	0.7	1.7	28.8
C 국제수지 개선효과 (A+B)		134.2	3.9	2.3	3.5	4.3	148.2
D 원유수입액(C)		420.6	36.9	49.3	63.9	81.3	652.0
(C/D, %)		(31.9)	(10.5)	(4.7)	(5.5)	(5.3)	(22.7)
E 국제수지		-20.2	141.6	50.6	-21.8	-87.3	62.9

〈표〉 해외건설의 GNP 기여효과 (단위: 10억원)

구분	년도	'80~'87	'88	'89	'90	'91	합계
A 순외화 수입		8,212.7	183.3	104.1	197.5	192.1	8,889.7
B 순외화 수입의 부가가치 유발		6,555.4	138.3	78.8	149.5	140.2	7,062.2
C 기자재 수출		1,809.8	102.4	47.0	49.5	127.3	2,136.0
D 기자재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1,250.6	66.6	34.7	35.7	80.2	1,467.8
E 총 기여효과(A+B+C+D)		17,828.5	388.2	258.2	424.3	412.5	19,311.7
F GNP		540,977	126,231	141,066	168,388	206,027	1,182,689
E/F(%)		3.3	0.3	0.2	0.3	0.2	1.6

〈표〉 해외건설의 고용창출 효과 (단위: 천명)

구분	년도	'80~'87	'88	'89	'90	'91	합계
A 해외건설 현지취업		965	29	18	11	10	1,033
B 국내 고용유발		1,499	34	18	31	36	1,618
(순외화 수입에 의한 고용유발)		(1,250)	(23)	(13)	(25)	(23)	(1,334)
(기자재 수출에 의한 고용유발)		(249)	(11)	(5)	(6)	(13)	(284)
C 총 고용효과(A+B)		2,464	63	36	42	46	2,650
D 총 취업인구		117,848	16,870	17,511	18,036	18,576	188,841
E 총 취업인구에 대한 비중 (C/D, %)		2.1	0.4	0.2	0.2	0.2	1.4